
	규정		문서번호	TWP-B103	
			제정일자	2008. 02. 01.	
	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 규정		개정일자	2018. 02. 19.	
			개정번호	1	페이지

목 차

부 칙

작성부서	서무과	제정일자	2008. 02. 01.
--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		승 인
직 책	담 당							총 장
서 명								
일 자								

	규정	문서번호	TWP-B103
		제정일자	2008. 02. 01.
	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18. 02. 19.
		개정번호	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20조의4 내지 제20조의5에 의거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 및 조직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개방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
2. 개방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

② 학교법인에 개방이사는 2배수를, 감사는 단수를 추천한다.

제3조(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추천위원회회의의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<개정 2018.02.19.>
2.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<개정 2018.02.19.>

② 제1항 제2호의 추천위원은 이 법인 및 대학의 건학이념 구현에 적합한 인사이어야 한다.

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, 업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.

제6조(회의) ①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.


②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④ 추천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8.02.19.>

제7조(회의록) 회의록에는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
제8조(비밀유지) 추천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는 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

	규정		문서번호	TWP-B103
			제정일자	2008. 02. 01.
	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 규정		개정일자	2018. 02. 19.
			개정번호	1
		페이지	10/4	

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9조(간사) ①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간사는 대학평의원회 간사로 한다.<개정 2018.02.19.>

③ 간사는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,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(규정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추천위원회 위원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\